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1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 안 이 유

- 가. 제13차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 사유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통장의 “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” 및 장학생의 “품행이 극히 불량”이라는 문구를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개정하여 장학금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,
- 나. 2001. 10. 20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확대로 2002 학년도부터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이 불필요하게 됨.

## 2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 제1조(목적)중  
“ 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 한다.
- 나. 조례 제5조(선발) 제②항 삭제
- 다. 조례 제9조(지급정지) 제①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
  - 1. 보호자인 통장이 시작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
  - 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## 3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(제23조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다. 기 타 :
  - (1) 입법예고(2006. 1. 19 ~ 2006. 2. 8) 결과 : 의견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5조(선발)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(지급정지)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
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<u>중·고등학교</u>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---<u>고등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5조(선발)①</b>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b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·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,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</b></p>	<p><b>제5조(선발)①</b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</p>
<p><b>제9조 (지급정지)①</b>장학생에게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p>	<p><b>제9조 (지급정지)①</b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p>